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(약칭: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)



[시행 2025. 1. 17.] [국토교통부령 제1440호, 2025. 1. 17., 일부개정]

국토교통부 (자동차운영보험과 - 총괄) 044-201-4761, 4870 국토교통부 (자동차운영보험과 -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) 044-201-4871, 4873 국토교통부 (자동차운영보험과 - 진료수가, 피해지원사업) 044-201-4861, 4872

- 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1조의2(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의 승인 기준 및 신청 절차 등) ①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5조의2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(이하 "보험등 가입 의무"라 한다)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도지사・특별자치도지사(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"시・도지사"라 한다)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 - 1. 영 제5조의2 각 호의 사유 및 그 운행중지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- 2. 자동차등록증 사본
 - 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 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고,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보관하여야 한다.
 - 1. 영 제5조의2의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사유에 해당할 것
 - 2. 운행중지기간이 적절할 것
 - 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보관할 때에는 자동차보유자의 성명·주소, 자동차의 종류·등록번호 및 보관일자·보관기관 등을 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보관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 - ④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승인을 받은 자동차보유자가 그 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승인을 취소하고, 자동차보유자에게 제2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환하여야 한다.
 - ⑤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승인을 받은 자동차보유자에게 그 면제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가 종료되기 15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알려야 한다.<신설 2025. 1. 17.>
 - ⑥ 시·도지사는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가 종료되거나 제4항에 따라 그 승인이 취소되어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.<신설 2025. 1. 17.>

[본조신설 2012. 9. 4.]

- 제1조의3(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 유예) ①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보관 확인서를 첨부하여 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보험회사등(이하 "보험회사등"이라 한다)에 신청해야 한다.
 - 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의 잔여 계약기간(유예를 결정한 날 이후 남은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을 말한다)을 해당 보험 또는 공제의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행중지기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5. 1. 17.]

제2조(의무보험 종료 사실의 통지) 보험회사등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(이하 "의무보험"이라 한다)의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릴 때에는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다음 각 호의 사실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2. 9. 4., 2016. 1. 22., 2025. 1. 17.>
- 1.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(이륜자동차 번호판 및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 영치될 수 있다는 사실
- 2.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 사실
- 3.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
- **제3조(의무보험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)**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등이 의무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려야 하는 시기는 별표와 같다.
 - ② 보험회사등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무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릴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(이하 "가입관리전산망"이라 한다)을 이용하되, 가입관리전산망이 작동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.
 - ③ 보험회사등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실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개정 2012. 9. 4., 2024. 7. 10.>
 - 1. 자동차등록번호
 - 2. 자동차소유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
 - 3.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"시 장등"이라 한다)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제4조(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) ① 시장등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에는 자동차 소유 자의 성명・주소, 자동차의 종류・등록번호 및 영치 일시 등이 적힌 별지 제3호서식의 영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9. 4., 2024. 7. 10.>
 - ② 시장등은 자동차보유자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즉시 해제하고, 그 사실을 해당 자동차를 등록한 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.<개정 2024. 7, 10.>
- 제5조(보험금등 산출 기초의 증명서류) 영 제7조제2항제4호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"란 치료비의 명세 별로 단위, 단가, 수량 및 금액을 명시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한 치료비청구명세서 및 치료비추정서를 말한다. 이 경우 치료비추정서에는 주치의의 치료에 관한 의견이 표시되어야 한다. <개정 2012. 9. 4., 2013. 3. 23., 2023. 5. 16.>
- 제6조(가불금의 지급기한) 법 제11조제2항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- 제6조의2(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) ① 보험회사등이 법 제12조의2제1항 및 영 제11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이하 "건강보험심사평가원"이라 한다)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여야 한다.
 -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때에는 해당 보험회사등에 청구받은 사실을 알려야한다.

[본조신설 2012. 9. 4.]

- **제6조의3(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지급)**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6조의2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여야 한다.
 -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 및 이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하게 할 수 있다.<개정 2020. 12. 16.>

-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6조의2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 기관 및 보험회사등에 그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.
- ④ 보험회사등은 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 수가를 지급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2. 9. 4.]

- 제6조의4(자동차보험진료수가 확인·조정 등의 방법 및 절차)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 제1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의료기관에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심사결과가 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.
 -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 제1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확인 결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확인 결과 및 조정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 알려야 한다.
 - ③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상호 정산해야 한다.
 - 1. 의료기관에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조정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보다 많은 경우: 그 차액을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에 반환할 것
 - 2. 의료기관에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조정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보다 적은 경우: 그 차액을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추가 지급할 것

[본조신설 2024. 7. 10.]

[종전 제6조의4는 제6조의5로 이동 <2024. 7. 10.>]

- 제6조의5(이의제기 등) 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또는 법 제1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확인·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이의제기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2. 7., 2020. 12. 16., 2024. 7. 10.>
 -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게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.<개정 2014. 2. 7., 2020. 12. 16.>
 -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그 결과에 따라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또는 제6조의4제3항 각 호에 따라 추가 지급되거나 반환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정산해야 한다.<신설 2014. 2. 7., 2024. 7. 10.>

[본조신설 2012. 9. 4.]

[제목개정 2014. 2. 7.]

[제6조의4에서 이동, 종전 제6조의5는 제6조의6으로 이동 <2024. 7. 10.>]

제6조의6(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) 제6조의2, 제6조의3 및 제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 보험진료수가의 청구, 심사, 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3. 3. 23, 2024. 7. 10.>

[본조신설 2012. 9. 4.]

[제6조의5에서 이동, 종전 제6조의6은 제6조의7로 이동 <2024. 7. 10.>]

제6조의7(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・관리)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 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・관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외출・외박 기록표에 적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4. 2. 7.]

[제6조의6에서 이동 <2024. 7. 10.>]

제7조(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) 법 제15조제2항에서 "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- 1.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산정・지급하는 진료의 기준
- 2.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산정방법
- 3. 삭제 < 2014. 2. 7.>
- 4.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방법
- 5. 삭제 < 2020. 12. 16.>
- **제7조의2(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의 위촉 등)**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.
 - 1. 법 제1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위원:「보험업법」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에 서 추천한 사람 5명
 - 2. 법 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업계를 대표하는 위원: 「자동차관리법」제68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에서 추천한 사람 5명
 - 3. 법 제1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: 다음 각 목의 사람 5명
 - 가.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」또는「자동차관리법」을 담당하는 사람 1명
 - 나.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「보험업법」을 담당하는 사람 1명
 - 다.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자동차보험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1명
 - 라.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자동차정비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1명
 - 마. 「소비자기본법」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는 사람 1명 [본조신설 2020, 10, 8.]
- 제8조(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경우) 법 제24조제2항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자동차 보유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 - 1. 과거 2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
 - 가. 「도로교통법」제43조에 따른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
 - 나. 「도로교통법」제44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
 - 다. 「도로교통법」제54조제1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의 조치 의무
 - 2. 보험회사가「보험업법」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법 제5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의 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인정한 경우
- **제9조(의무보험 계약의 해제 가능 사유)** 법 제25조제8호에서 "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20. 10. 8.>
 - 1. 「자동차관리법」제48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 신고를 한 경우
 - 2.「자동차관리법」제43조제1항제2호 또는「건설기계관리법」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
 - 3.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관한 계약에서「상법」제650조제1항 · 제2항, 제651조, 제652조 제1항 또는 제654조에 따른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제10조(보상 청구 시 첨부 서류) 영 제20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"란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별지 제144호의7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말한다.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[본조신설 2023. 5. 16.]

제11조 삭제 <2023. 5. 16.>

- 제11조의2(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) ①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(이하 "자동차손 해배상진흥원"이라 한다)은 매년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업무의 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39조의10제3항에 따른 예산서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법 제39조의4제1항제5호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"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<개정 2025. 1. 17 >
 - 1.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의 교육 및 홍보
 - 2.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관련 통계 및 자료의 수집 관리
 - 3. 법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정책 연구 지원
 - 4. 법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과 관련된 공제사기행위(공제사고의 발생,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공제사업자를 기망하여 공제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)의 예방 및 조사 지원
 - 5. 그 밖에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및 이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대사업
 - ③ 법 제39조의4제2항제3호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"이란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에 따라 인가를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.<신설 2025. 1. 17.>
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.<개정 2025. 1. 17.>

[본조신설 2016. 1. 22.]

- **제11조의3(이사회의 구성)** ① 법 제39조의5제5항에 따른 이사회(이하 "이사회"라 한다)는 원장 1명, 이사 12명(이사장 1명을 포함한다) 이내로 구성한다. <개정 2022. 1. 14.>
 - ②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, 이사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.
 - 1.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공제사업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
 -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
 - 가.「고등교육법」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교통·금융·보험·법률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(職)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 - 나.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 - 다. 교통·금융·보험·법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- ③ 원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개정 2022. 1. 14.>
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6. 1. 22.]

- **제11조의4(이사회의 운영)** ①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원장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.
 - ②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주재한다.
 - ③ 이사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 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6. 1. 22.]

제11조의5(자율주행정보 등의 열람 및 제공 신청서) 영 제33조의16제1항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율주행정보 열람 및 제공 신청서"란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 열람 및 제공 신청서를 말한다.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[본조신설 2020. 10. 8.]

- 제12조(의무보험 가입 여부의 확인) 관할 관청(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은 법 제42조제1항, 제 2항 및 이 규칙 제1조의2제6항에 따라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할 때에는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여야 한다. 다만, 관할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시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의무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9. 4, 2025. 1. 17.>
 - 1. 해당 계약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파일이 생성되지 아니한 경우
 - 2. 가입관리전산망의 장애 등으로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

제12조의2 삭제 <2023. 7. 10.>

제13조(범칙자 적발 보고서의 작성)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(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」제5조제35호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)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범칙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범칙자 적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.

[전문개정 2024. 7. 10.]

- 제14조(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) ① 시장등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를 한 경우에는 별책의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9. 4., 2024. 7. 10.>
 - ② 제1항에 따른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- 제15조(범칙금의 납부)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(이하 "수납기관"이라 한다)은 범칙금을 받은 경우에는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영수확인통지서를 시장등 또는 경찰서장에게 보내야 한다. <개정 2012. 9. 4., 2024. 7. 10.>
 - ② 시장등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영수확인통지서를 받았으면 별책의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에 징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<개정 2012. 9. 4., 2024. 7. 10.>

부칙 <제1440호,2025. 1. 17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보험등 가입 의무 면제 종료 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) ① 제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승인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 - ② 제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험등 가입 의무 면제가 종료되거나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